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명예안전산업안전감독관 지원 근거 마련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19호)

2026. 3.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명예안전산업안전감독관 지원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2026년 1월 26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통해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과 고도화되는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최근 산업 구조의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점차 복잡·전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현장 안전 활동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노사 간 안전 관련 정보와 전문성의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산업현장의 안전은 노사가 공통의 기준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효과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한정된 공공 감독 인력만으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자율 안전관리의 실효성 제고 및 산업재해 예방 체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교육 훈련, 수당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23조제4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수당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

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난 2월 19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는¹⁾ 등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며, 교육훈련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을 향상시키는 등의 지원은 필요한 정책으로 판단됨.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자율적인 참여가 전제된 것으로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직이므로 이들에게 수당 지급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전반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

1)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